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5. 12. 19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17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18회(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05년 12월 5일)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제정근)

가. 제안이유

- 점용료,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고,
-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.3.1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점용료,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.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단계별 부담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함.
-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점용료 산정기준표 신설
 - 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자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·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: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

3.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(専門委員 이남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
 - 점용료, 변상금 분할 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이자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

-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단계별 부당액을 조례에 이관 규정하고
-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.3.1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정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
○ 안제2조제3호에

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을 추가하고자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·햇빛가리개, 기타 이와 유사한 것」을 신설

○ 안제5조제2항중

「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불인다」 을 「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로 한다」로 개정

○ 안제7조제1항제5호에

점용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시설환경개선을 촉진하고자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의 비·햇빛가리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」을 신설(추가)하고 동조제2항제4호에 감면율은 「점용료의 2분의1을 감면」

○ 안제9조제3항중

「연8퍼센트의 이자」 을 「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자」로 개정

○ 안제10조와 제11조 및 제14조를 신설

- 「제10조(과태료부과·징수)」 구청장은 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"별표2"와 같다.」로
- 「제11조(준용규정) 점용료·변상금,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」로
- 「제14조(시행규칙)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」로 각각 신설

○ 「제10조내지 제11조」 을 각 「안제12조내지 제13조」로 개정.

○ 또한 "별표1"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

「제10호」 을 「제11호」로 하고 제10호에 「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·공고·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·비가리개 시설·기타 이와 유사한 것」에 대한 「점용료 산정기준」은 "점용면적 1㎡당 1년 단위로 토지가격에 0.0001을 곱한 금액"으로 개정한다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14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 시법으로 조례안의 관련규정도 특별법(점용료 감면 유효기간의 증거 법)과 동일하게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 부칙에 유효기간을 명시

나. 수정안 주요내용

- “부칙”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제2조제3호와 제7조제1항 제5호 및 동조제2항 제4호는

2014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를 신설한다.

5. 審査結課 : 修正案可決